한국인공지능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Artficial Intelligence and Law

SNU AI POLICY INITIATIVE

공동주최 웨비나 (2020.4.2.)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http://ai.re.kr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개인정보 거버넌스 실현 방안」 웨비나

데이터 3법의 개정에 따른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임 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부교수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기획이사

정종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연구원

새로운 Privacy Governance System의 개막

❑ 2020. 1. 9.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0. 8. 5. 시행)

❑ 주요 개정 배경

-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과 감독기능이 분산

❑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 데이터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된 **감독·집행 권한과 조직을 개보위로 최대한 일원화**
- 개보위를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격상

프라이버시 구현의 핵심 수권기관

개보위의 Mandate – 프라이버시의 구현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정보주체의 권리이자 경제 참여의 도구

오늘날 개인의 자아 실현 및 존엄 구현을 위해 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 만큼이나 개인의 디지털 경제에의 참여와 가치 창출을 가능케 하는 정보의 활용이 중요

개보위의 정책적 수권(존립 이유)는 프라이버시의 적정한 구현

프라이버시의 유동적(evolving), 다면적(multi-dimensional), 비동질적(heterogeneous)인 성질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운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해결

거버넌스의 변화

현(개정 전) 개보위의 조직·권한상의 한계

개보위는 심의·의결권만 있고, 대부분의 집행·감독 권한은 타 부처에 귀속

기능·역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독립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프라이버시 핵심 수권기관으로서의 리더쉽 발휘 어려움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하는 거버넌스 체제는 상호 견제의 이점은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노하우 축적과 전문성 확보에는 오히려 장애

개보위 지위의 변화: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격상

❑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기관)으로 격상

- 직원인사권과 예산안편성권을 독자적으로 행사
- 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권의 배제
- 위원장의 소관사무 관련 국회 의견진술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및 의안제출건의권

❑ 개보위의 독립성 확보 기여

개보위 구성의 변화: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의 강화

- 개보위는 **상임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상임위원(2인):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 비상임위원(7인): 위원장 제청 2인, 교섭단체 추천 5인
- 개보위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제 강화
  - 행정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보다 부합
- 개보위의 **전문성** · **독립성** · **중립성** 강화
  - 위원의 신분보장,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규정의 도입
  -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의 법률 규정

개보위 권한의 변화: 집행·감독 권한의 집중

❑ 개보위는 기존의 심의・의결 권한에 더해 **집행・감독 권한까지 보유**하게 됨

- 법령개선 및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조사・처분과 같은 집행・감독업무까지 수행

❑ 종래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업무가 개보위로 통합**

- 방통위의 경우 현재 이용자정책국 내에 있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개인정보보호침해조사과의 기능 중 일부를 개보위로 이관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제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정부법

보험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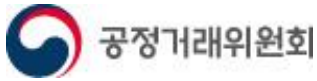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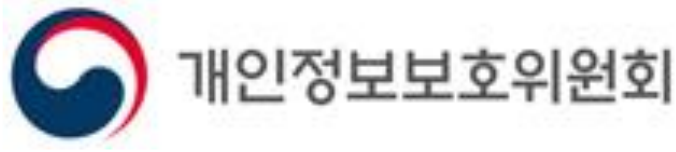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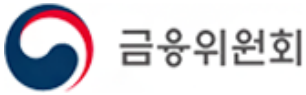

의료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금융지주회사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교육정보시스템의운영등에관한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프라이버시 정책 선도를 위한 주창 기능(privacy advocacy) 수행

- 프라이버시에 대해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목표로서의 **프라이버시의 개념,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 필요
  - 개정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검찰, 경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소관업무 관련 기관, 단체 및 이해관계자 존재
-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보위의 정책적 내용과 방향에 대해 사회 전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라이버시 주창 기능**의 수행 필요

COVID-19 PANDEMIC

역학조사와 동선공개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장은?

SNU AI POLICY INITIATIVE

신생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 구축(trust building) 필요

- 개보위는 집행기관으로서는 신생기관
  -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 발휘 위해서는 보호 및 집행 대상 모두로부터 신뢰 구축** 필요
- 신뢰 구축의 기반은 전문성, 독립성, 적법절차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판단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 받아야 함(**전문성**)
  - 조직 외적으로는 물론이고,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도 조사・심의 기능간의 견제와 균형 실현해야 함(**독립성**)
  -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방어권과 적법적차를 보장해 주어야 함(**적법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국 1관(5개과)

지방사무소 없음

정원 51명(2020. 3. 31. 기준)

출처 : 개보위규정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

6국 4관 1대변인(44개과)

5개 지방사무소

정원 648명(2018.11.19.기준)

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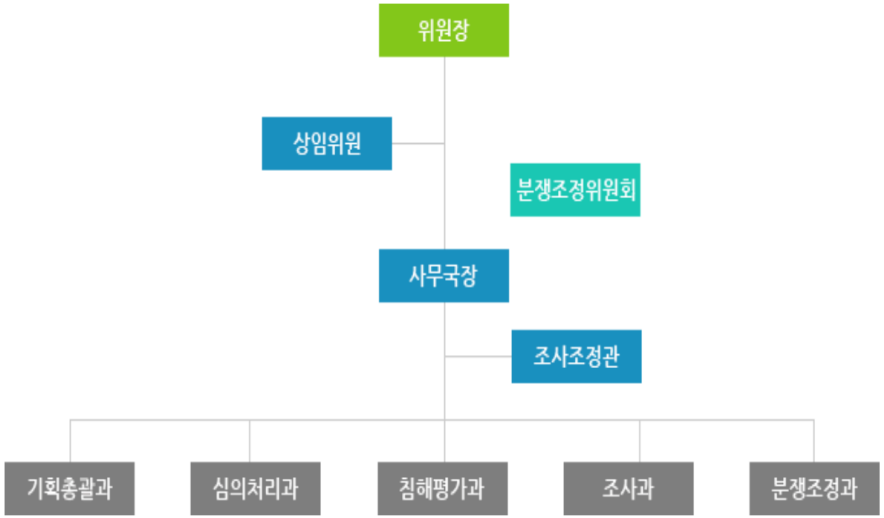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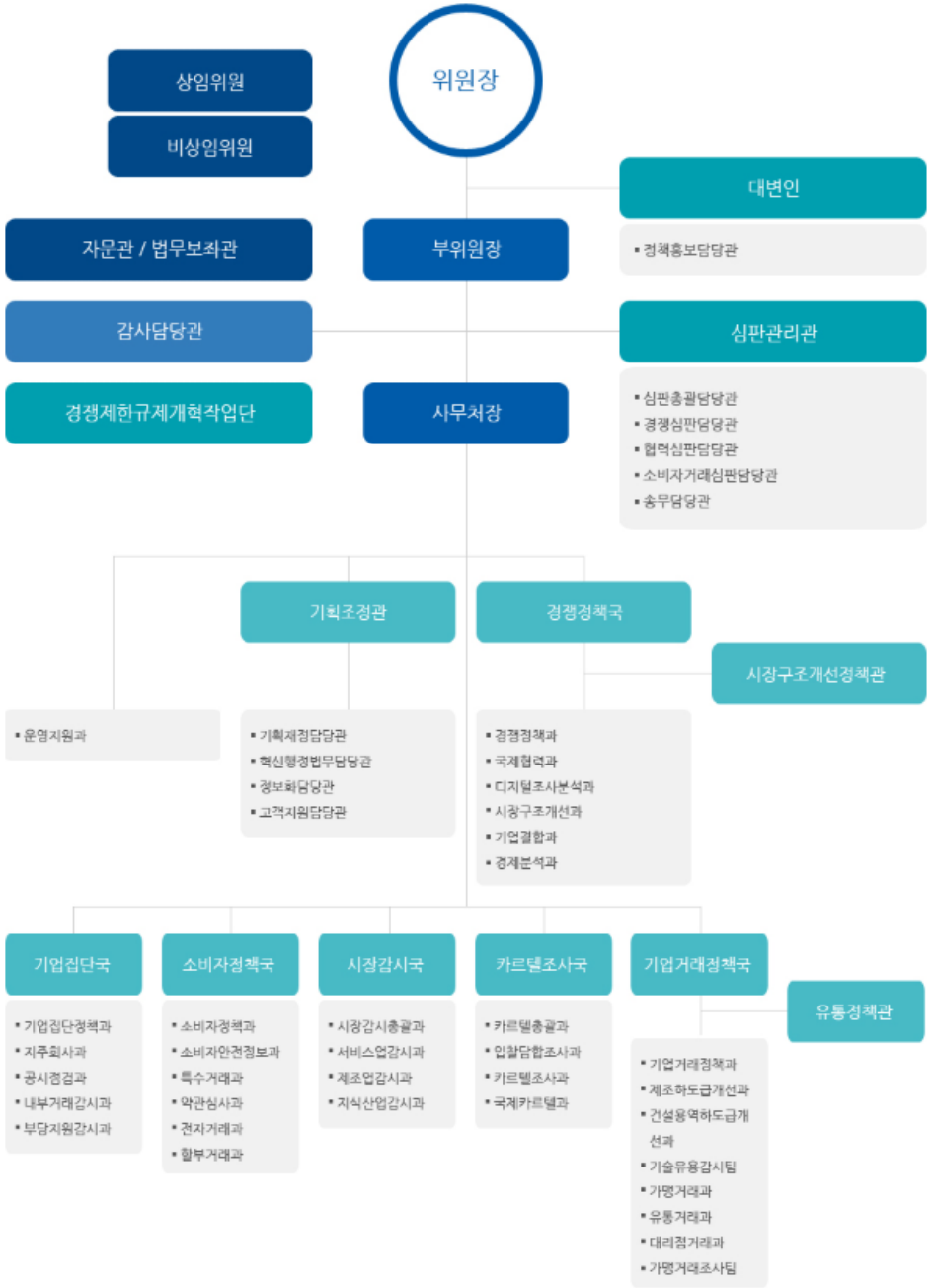

초기의 '선택과 집중'(prioritization) 중요

- 초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
  - 초기 집행 사건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향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집행 효과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음
-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므로 **지속적인 내부검토 및 모니터링** 필요
  - 실무 일선에서 전문성은 직접적인 집행 경험을 통해 축적될 수밖에 없음

질의 · 응답

감사합니다